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문의 : 전응길 광물자원팀장(2110-5448) 윤용석 사무관(2110-5435)
최균석 주무관(2110-5449)

미국 분쟁광물 규제에 대해 본격 대응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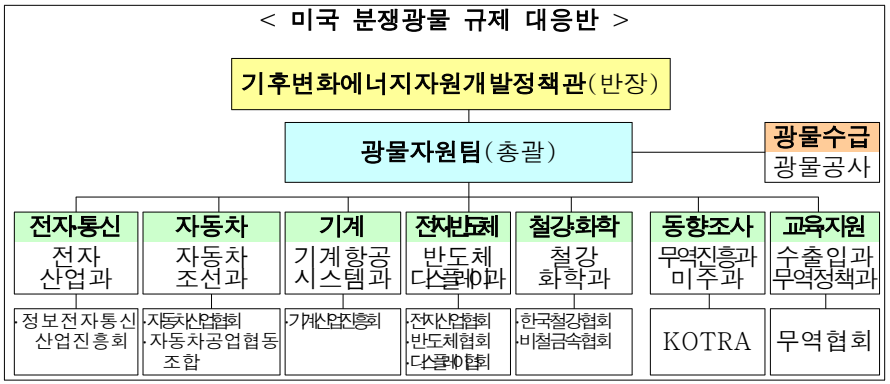
- 3.27일, 지경부 차관 주재 업계 대응 간담회 개최 -

□ 지식경제부는 국내 전자,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업계, 유관기관들과 함께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3.27일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등 산업별 대표단체와 광물공사, 무역협회, KOTRA 등의 지원기관들이 참석하였음

○ 동 간담회에서는 관련 업계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을 구성·가동하기로 함

<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 >



□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인 "Dodd-Frank Wall Streer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동 규제는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7월 제정되었으며, 당초 '11.4월 세부 규제시행방안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연기됨

○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 규제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상장기업에 납품하는 우리 업체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현재 우리기업들은 규제 대상 광물 수입량의 대부분을 라오스(주석), 중국(탄탈륨), 미국(텅스텐), 홍콩, 호주, 일본(금)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DR콩고와 그 인근국가에서 수입되는 양은 극히 미미하지만,

○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상장기업들은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납품 기업들에게도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바,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함

□ 동 간담회를 주재한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의 세부 시행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 규제 시행시 우리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사전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필요시 분쟁지역에서 반출된 광물의 사용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향후 지식경제부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대응반을 중심으로 미국의 규제 시행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임

○ 광물공사는 규제대상 광물의 대체 수입선을 모색·안내하고, KOTRA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신속히 모니터링·전파할 예정이며,

○ 무역협회, 업계 대표 단체 등은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규제 관련 정보·동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CEO,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등의 공동 대응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1 분쟁광물규제 대응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 3.27(火) 16:00-17:30 / 지식경제부 초정실(618호)

○ **논의 안건** : 분쟁광물 규제 대응 현황, 계획 등 논의

○ **참석자** :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분쟁광물 규제 관련 기업·단체 등

구분	기관	직책	성명	비고
정부	지식경제부	차관	조석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김준동	
		광물자원팀장	전응길	
전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이사	강홍식	
	삼성전자	전무	김진태	상생협력팀
	SK하이닉스	상무	두성규	구매실
자동차	자동차공업협동조합	팀장	최문석	수출전시팀
기계	기계산업진흥회	상무이사	김진희	
소재	비철금속협회	이사	김수봉	
자원개발	광물공사	본부장	박성하	
무역	무역협회	종합지원단장	박태성	FTA무역지원센터
무역	KOTRA	실장	강영수	산업자원협력실
연구	삼정KPMG	상무	박문구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팀장 김기정, LG전자 차장 주호성, Ls-Nikko 김백상 부장, 기계산업진흥회 팀장 정경수, 광물공사 권순진 팀장, 삼정KPMG 이사 김정식, KT-net 팀장 한준덕 등 배석

□ 진행 순서

○ 인사 말씀 (조석 차관, 2분)

○ 분쟁광물 규제 개요 발제 (삼정KPMG, 15분)

○ 업체별 대응현황·계획 발표 (기관 · 기업별 5분)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삼성전자 → 하이닉스 → 자동차공업협동조합 → 기계산업진흥회 → 비철금속협회 → 광물공사

○ Q&A·의견수렴

참고2 미국 분쟁광물 규제 개요

1. 분쟁광물 규제 개요

□ 도입 배경

○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광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과 투명성 제고

□ 도입 경과

○ '10.7월,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미국 상원의회 통과
(Dodd-Frank Wall Streer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도드-프랭크법 제1502조에 분쟁광물 규제 포함

○ 당초 '11.4월 법 시행령 제정 예정이었으나 연기

* 규제대상 업계의 강력한 반발, 공급사슬 파악의 어려움, 법 적용범위의 모호성 등

□ 주요 내용

○ 美상장기업은 DR콩고와 인근 국가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美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쟁광물 : DR콩고와 주변국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 등 의미

○ 대상국(10개) : DR콩고, 콩고, 수단, 르완다, 브룬디, 우간다,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 규제광물(4개 광종) :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 의무 : 미국내 상장기업은 연간보고서 내에 분쟁광물 사용여부 및 증빙서류 등을 보고할 의무(위반시 영업금지명령 및 민·형사 처벌 가능)

○ 동 규제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부품 등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美상장기업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도 영향 예상

* 분쟁광물 사용 제품은 美수출 타격, 기업이미지 하락, 추가 규제 등 피해 가능성

< 규제대상 광물의 주요 용도 >

구분	수요산업	주요용도	산업광물
주석 (Tin)	전자, 자동차, 공업기계, 건설 등	- 파이프 및 회로연결 땜납 - 주석 도금 철, 합금석	주석
탄탈륨 (Tantalum)	전자, 의료기계, 공업장비 및 기계, 항공우주	- 주요 전자산업의 축전기 - 초경질 공구, 전투기 부품엔진	콜탄 (콜럼브석-탄탈석계)
텅스텐 (Tungsten)	조명, 공업기계 등	- 금속선, 전극 - 전기 접점, 난방장치, 용접	철망간 중석, 회중석, 철중석 등
금 (Gold)	보석, 전자, 항공우주	- 보석, 전기도금 - IC배선	다른 형태의 광물

2. 분쟁광물 규제 문제점

□ **(인증)** 美상장기업은 분쟁광물 사용여부와 증빙서류를 보고해야 하므로 美상장기업에 납품하는 업체 등 공급사슬 내에 있는 외국기업도 영향

＊ 美상장기업들은 납품업체들에게 분쟁광물 未사용(Conflict Free)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납품을 중단할 우려

○ 분쟁광물 非사용 기업이라도 제품에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美증권거래위는 광물 원산지와 무관하게 1~2단계 절차 요구 예상)

< **분쟁광물 규제 관련 美상장기업의 단계별 준수사항** >

구분	의무 사항
1단계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이 생산제품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2단계	·사용된 광물의 원산지가 DR콩고나 인근국가인지 확인하고, 해당지역이 원산지가 아니라면 그 광물의 원산지 확인방법을 보고해야 한다
3단계	·해당 광물의 원산지가 DR콩고나 인근국가이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하다면, 기업들은 공급사슬을 추적하고 실사노력에 대한 독립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분쟁광물 규제는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많은 유통과정상 제품에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를 확인하기는 난해

＊ 광물의 공급 관행, 이동의 용이성 등에 따라 공식,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발되는 광물의 원산지를 일일이 추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

○ 분쟁광물 未사용(Conflict Free) 인증, 실사(Due-Diligence) 등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은 아직 불명확

＊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가 추진 중인 도드-프랭크법 하위 규정이 제정되어야 분쟁광물 규제 세부 사항이 어느 정도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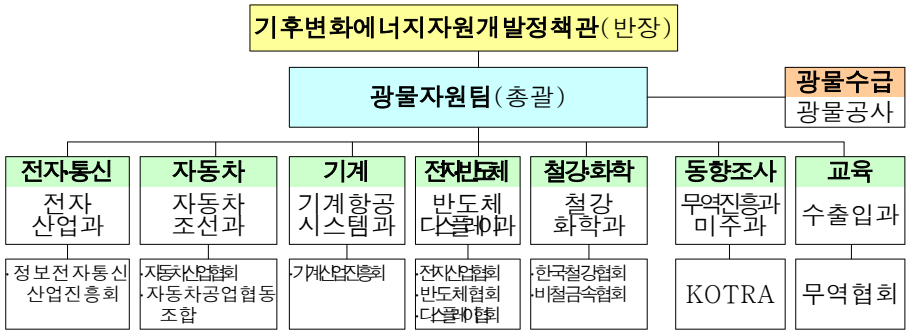
□ **(기타)** 동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와 아울러 기업 이미지 하락, 불매운동이 제기될 가능성

○ 미국에서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

참고3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 계획

1. 대응 체계 구축

□ 지경부 산업별 담당과와 유관 단체, KOTRA, 무역협회, 광물공사를 포함하는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 구성



2. 대응 방안

◆ **(세부규정 제정 이전)** 세부 규제내용이 불확실하므로 홍보 등을 통해 분쟁광물규제에 대한 우리기업 인식 제고, 유통라인·원산지 파악 등 대비

◆ **(세부규정 제정 이후)** 규제 세부내용 파악 후 규제 시행 이전까지 분쟁광물 非사용 요청, 광물 원산지 인증, 실사 등 규제 대응 수행

○ **(지경부)** 분쟁광물 규제 대응 총괄, 산업별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 **(KOTRA)** 미국 등 현지 KBC를 활용해 수시로 주요국 정부·업계의 분쟁광물규제 관련 대응 동향 파악, 유관기관에 정보 배포·공유
- **(무역협회)** 정보가 부족하고 개별대응이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쟁광물 규제 관련 정보 제공, 교육 등 수행
- **(광물공사)** 분쟁광물 규제로 인해 광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수입선 모색·안내, 차질없는 규제 광물 비축 등 수행

○ **(산업별 단체)** 분쟁광물 규제 홍보(홈페이지 게재,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산업별 기업 애로사항 파악·건의, 공동 대응방안 등 모색

- **(개별 기업)** 협력사 임원,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분쟁광물 규제 홍보·교육, 제품 유통라인 파악 등 대응 방안 모색